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17

발의연월일: 2022. 4. 19.

발 의 자: 정춘숙·김상희·이용빈

민병덕 • 권인숙 • 이수진(비)

이용선 · 허종식 · 양정숙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범죄자 처벌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형사법적인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 및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기관 등에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 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처함(안 제13조 및 제24조).
- 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 보수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을 정보 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정보의 삭제 를 지원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아.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경찰관서의 협조 와 스토킹 신고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을 규정함(안 제22 조 및 제23조).

법률 제 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 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스토킹행위를 말한다.
 -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을 말한다.
- 4.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2. 스토킹범죄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 4.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 5. 피해자에 대한 취학지원, 취업지원 등 지원서비스 제공
-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운영
- 7.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스토킹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

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취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피해자가 보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성년자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 생인 경우 주소지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

- 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취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등을 알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 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 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주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게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등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 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피해자 유급휴가 지원) 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피해자가 상담, 병원치료, 수사기관 조사 및 법

- 원 출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기간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 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제14조(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이하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스토킹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스토킹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 계획의 수립
 - 3. 피해자등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 ·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 4.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5.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는 업무
 - 6.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출석 등 동행 지원
 - 7. 스토킹에 대한 신고와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8.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 9.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
- 10.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설치·운영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또는 「스토킹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 ②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16조(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 2. 법률구조법인
- 3. 사회복지법인
-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스토 킹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

는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

- 제19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닌 된다.
 - ② 제12조에 따른 유급휴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 또는 사용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 수 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피해자 정보의 삭제 지원) ① 국가는 제20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이하 "피해자 정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피해자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정보의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0 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정보를 누설한 자가 부담한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정보의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해자 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정보의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경찰관서의 협조)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제23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장소, 피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 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제20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정보를 누설한 사람 제25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 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